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가단5177863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

변론 종결2016. 10. 25.

판결 선고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89,774,424원과 그 중 89,565,384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10. 3.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와 피고 A 사이에 2015.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5. 3. 18. 접수 제109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3항 및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774,424원과 그 중 89,565,384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0. 9. 17. 신용보증원금 99,450,000원, 보증기한 2017. 9. 16.까지, 만약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추가보증료 및 기타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증기한이 세 차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5. 9. 11.로, 보증금액은 두차례 변경되어 88,000,000원으로 되었다. 피고 B은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서 상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9. 28. 국민은행으로부터 117,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3. 13. 이자연체를 이유로 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2015. 6. 4.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89,565,384원(원금 87,998,400원 및 이자 1,566,98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으로 209,040원을 지출하였으며,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는 연 12%이다.

다. 피고 A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5. 3. 18. 접수 제10934호로 피고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는데, 등기원인은 2015. 3. 10. 매매계약이며, 신고된 거래가액은 1,240,000,000원이다.

라. 한편, 2015. 3. 10.경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이천시 D 답 2807m²와 하남시 E 대 142m² 및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1) 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4. 9. 12. 채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48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 3. 10. '주식회사 금하'가 17억 원에 매수한 부동산인데 피고 A이 2012. 1. 12.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2) 이천시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F가 청구금액을 2,500만 원(등기된 채권최고액은 4,800만 원이다)으로 하여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의 2015. 2. 25.자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11. 11.

경락되었는데,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은 8,421만 원을 평가되었고, 위 부동산에는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로 안양원에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6,500만 원, 2015. 3. 10. 기준 대출원금은 5천만 원, 이자는 107,013원)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2015. 4. 7.부터 2015. 6. 10.까지 원고(청구금액 88,000,000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청구금액 382,500,000원), 농협은행(청구금액 68,622,086원), 안양원에농업협동조합(청구금액 11,174,474원)을 채권자로 한 각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3) 하남시 소재 각 부동산은 거래가액이 440,000,000원으로 평가되는데, 채권최고액 388,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자 용일새마을금고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한편 위 부동산에도 2015. 4. 7.부터 2015. 6. 10.까지 원고(청구금액 88,000,000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청구금액 382,500,000원), 농협은행(청구금액 68,622,086원), 안양원에농업협동조합(청구금액 11,174,474원 및 66,146,580원)의 각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81718호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5. 8. 18. 위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98,405,360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A은 2015. 3. 10. 기준 농협은행에 대하여 4억 5천만 원, 이천새마을금고에 대하여 4억 2천만 원, 우리은행에 대하여 1억 원, 안양원에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50,000,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8,700만 원, 원고에 대하여 8,800만 원. F에 대하여 25,000,000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 피고 A: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회사,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익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제4항).

채무자회생법 제603조는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및 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5. 7. 2.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83966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11. 25.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연대보증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고, 원고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정해진 이익기간 내에 이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피고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미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위변제한 구상금과 법적 절차비용 합계 89,774,424원(= 대위변제금 89,565,384원 + 법적절차비용 209,0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9,565,38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6.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5. 10. 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 부칙(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4.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수개월 이내에 피고 A이 금융기관에 연체를 일으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5. 6.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A의 무자력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 A의 재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부동산	460,000,000원	거래가액 1,700,000,000원에서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1,240,000원을 공제
이천시 D 답 2807m ²	98,000,000원	거래가액 440,000,000원에서 근저당권자 용일새마을금고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300,000,000원을 공제
하남시 E 대 142m ²	140,000,000원	
합계	698,000,000원	

원고	88,000,000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는 우리은행의 일반대출에 관한 보증채무로서 중복채무이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
우리은행	100,000,000원	
F	25,000,000원	
이천새마을금고	420,000,000원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	50,000,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	87,000,000원	
농협은행	450,000,000원	
합계	1,220,000,000원	

(2) 그렇다면,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522,000,000원(=698,000,000원-1,220,000,000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이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1,700,000,000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우리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2억 4,000만 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하여 460,000,000원(1,700,000,000원-1,240,000,000원) 상당이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점, ②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함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A의 적극재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를 상회하여 매우 높은 점, ④ 피고 A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2015. 2. 26.부터,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2015. 3. 2.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2015. 3. 13.부터 각 연체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한층 더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 회사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H이 I의 주선으로 2014. 12. 피고 A이 운영하던 피고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피고 회사의 공장으로 사용되던 피고 A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 피고 A은 당시 2015. 2. 10.을 기준으로 부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A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몰랐다고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을다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5. 3. 19. 피고 A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기한 이 사건 유체동산의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H은 피고 A과 2015년 2월 또는 3월에 우리은행에 찾아가 담당 직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A에서 피고 회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을다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12. 10.자 법인양수도계약의 일환으로 체결되었는데, 위 법인양수도계약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H과 A 모두와 친분이 있었던 I의 주선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I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2015. 2. 26.부터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회사

명의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때부터 불과 약 20일 후인 2015. 3. 18. 마쳐졌으며, 그 등기원인도 2015. 2. 10.자 이 사건 양도계약이 아니라 2015. 3. 10.자 이 사건 매매계약인 점(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2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 A으로 그대로 두고 피고 회사가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에 그 이자를 납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현재도 A으로 되어 있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오히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피고 회사는 460,000,000원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점, ⑤ 피고 회사는 H이 사업타당성을 거친 다음 투자가치가 있어 피고 회사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업타당성을 거쳤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I의 진술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고 회사의 인수를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방문했었는데 투자가치가 없다며 인수를 포기한 사례가 있고, 피고 회사는 2014. 10. 21.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영업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우리은행도 이를 근거로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 A에서 피고 회사로 변경하지 아니한 점, ⑥ 피고 A이 현재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공장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앞서 살핀 사실만으로는 악의추정을 반복하고 피고 회사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회사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류재훈

별지